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3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2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63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2.

(3) 회 부 일 : 2025.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현행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 <신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 공제대상: ①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전환·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리스 제외)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②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7¹⁾</td><td>10</td><td rowspan="5">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6.9²⁾</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15</td><td>15.2³⁾</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2⁴⁾</td><td>30</td></tr><tr><td>인공지능 데이터센터</td><td>30</td><td>30.3⁵⁾</td><td>40</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25% 4) (~3년)25%, (4년~)20% 5) (~3년)35%, (4년~)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7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2 ³⁾	25	반도체 분야	20	20.2 ⁴⁾	3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30	30.3 ⁵⁾	4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7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2 ³⁾	25																												
반도체 분야	20	20.2 ⁴⁾	3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30	30.3 ⁵⁾	40																												
	○ 공제율: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 2025년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7</td><td>12</td><td rowspan="5">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자설립및연구개발</td><td>3</td><td>8</td><td>14</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자설립및연구개발</td><td>15</td><td>15²</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²</td><td>30</td></tr><tr><td>인공지능 데이터센터</td><td>30</td><td>30³</td><td>40</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20%, (4년~)15%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자설립및연구개발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설립및연구개발	15	15 ²	25	반도체 분야	20	20 ²	3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30	30 ³	4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자설립및연구개발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설립및연구개발	15	15 ²	25																												
반도체 분야	20	20 ²	3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30	30 ³	40																												
	○ 적용기한: 2029.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9. 12. 31.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인선의원안 2025. 7. 22. 발의(의안번호 11636), 황정아의원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9)

□ 개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전환·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또는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 및 운영비의 7%(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행정위원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에 대하여 30%(대기업), 30%~35%¹⁾(중견기업), 40%(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AI 데이터센터”)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AI 특화형 인프라 시설로서,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GPU(Graphic Processing Unit), TPU(Tensor Processing Unit) 등 AI 전용 반도체가 중심을 이루며 빠른 연산처리와 초저지연 네트워크 구조를 특징으로 함.²⁾

□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McKinsey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약 6조 7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³⁾

미국 등 주요국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미국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텍사스 주에 대규모 데

1)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3년간 35%

2) 출처: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201080000&bid=0055&list_no=94220&act=view)

3) McKinsey & Company, “What is a data center?”, 2025. 7.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mckinsey-explainers/what-is-a-data-center>)

이더센터 캠퍼스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2022년부터 추진한 동수서산(東數西算) 국가 전략에 따라 서부 지역에 초대형 데이터센터 허브를 구축하고 있으며⁴⁾, 프랑스는 올해 2월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16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우리나라 역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였고,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AI 분야 세부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화시설 등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관련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공제가 적용되고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35%의 공제가 적용될 예정임.

또한, 2025년 4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만지원시설에 AI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항만구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 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임.⁵⁾

한편, 국내 데이터센터는 2000년 52개소에서 2024년 165개소까지 증가하였고 최근 신설되는 데이터센터 중 AI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⁶⁾

4) 2024년 6월 기준 약 435억 위안을 투입 하여 195만대 이상의 서버랙 설치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정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2025. 4.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9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주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였음. 또한, SK그룹과 AWS가 총 7조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2025년 6월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였고,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6월 완공 예정임.

□ AI 데이터센터 투자금액 및 운영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AI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I 기술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등 컴퓨팅 자원 성능과 효율이 함께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열처리 등의 인프라가 필수적임.⁷⁾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은 2018년 2.42조원에서 2024년 6.22조원까지 확대되었고, 2028년에는 10.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2024년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된 글로벌 투자금액은 3,18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34.7% 증가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둘째, 글로벌 빅테크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에 대한 주도권 상실은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AI 기술 육성 및 국가 안보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I 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AI가 국민 일상 전 영역에 침투할 가능

7) SK에코플랜트, “엑셀 밟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얼마나 커질까?”, 2025. 3.

성이 존재하는데, AI 관련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법·규제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빅테크의 AI 독과점이 지속되는 경우, 민감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AI 기술우위의 적대국이 치명적 유해 알고리즘을 확산시켜 안보에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음.

이처럼 AI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각 국가가 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AI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 ‘소버린(Sovereign) AI’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AI 기술력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잠재적인 안보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지정할 계획인 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금액에 대하여 최대 35%의 공제가 적용될 예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도 세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개정을 통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분야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

화시설에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분야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므로 이인선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둘째, 황정아의원안은 AI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일반적인 국가전략 기술 분야 및 반도체 분야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 분야별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분야에 대한 공제율 인상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져 과도한 조세지출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기술 분야를 ① 일반, ② 신성장·원천기술 및 ③ 국가전략 기술(반도체 분야 제외), ④ 반도체 분야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기술 분야별 공제율 및 공제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제도가 복잡해지고 있음.

현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각 범주의 기술을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공제율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지출로 이어질 수 있음.

셋째,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AI 데이터센터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인선의원안은 공제대상이 되는 AI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로 정의하고 있고, 황정아의원안은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음.

반면, 「지능정보화 기본법⁸⁾」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⁹⁾」은 AI 데이터센터를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AI 데이터센터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기획재정부는 이인선의원안과 관련하여 AI 데이터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기업의 영리행위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54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 1. 22. 시행 예정)」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